

# 재외선거 안내문 〈제22호〉

제공일자 2011. 6. 29.



☎ 82-2-503-0648  
FAX 82-2-507-4352

## 재외선거 관련 정당 정책설명회·간담회 등 개최

### 허용되는 행위

-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,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
-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
-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
-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

### 금지되는 행위

-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·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(공직선거법 §113 ~ §115 위반)
-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여정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(공직선거법 §254 위반)
-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여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(공직선거법 §93, §254 위반)